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현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고기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292호로 2020년 11월 12일 고기관·정선희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구민이 헌혈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헌혈추진 협의회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헌혈추진협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 제10조)
- 나.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협회의 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11조 ~ 제13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혈액관리법」
- 나. 입법예고 결과(2020. 11. 13. ~ 11. 17.):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민이 헌혈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헌혈사업을 민·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헌혈추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는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지역사회에서 헌혈에 의한 혈액 확보라는 공공 가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0조는 협의회의 기능에 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헌혈 장려와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있다고 사료됨.
-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 검토결과

- 우리나라의 혈액공급은 단체헌혈에 의존하고 있으며, 헌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홍보부족으로 헌혈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고, 특정한 연령층과 일부 직업에 종사하는 계층에 한정되어 있어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헌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은 헌혈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영등포구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구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다는 측면에서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됨.
- 향후 헌혈추진협의회가 헌혈기부문화 형성을 통한 혈액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해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 참 고 자 료

## 1 혈액관리법

-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2 혈액관리법 시행령

- 제2조(헌혈의 권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